

#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입주자모집공고



## 1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223-125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창원시 거주자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30.(목)	2026.05.11.(월)	2026.05.12.(화)	2026.05.13.(수)	2026.05.19.(화)	2026.05.23.(토) ~ 2026.05.27.(수)	2026.06.01.(월) ~ 2026.06.04.(목)

## 2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합니다.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을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메트로시티자산데시앙.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택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상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3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30.(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창원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5.11.(월)	2026.05.12.(화)	2026.05.13.(수)	2026.05.19.(화)	2026.05.23.(토) ~ 2026.05.27.(수)	2026.06.01.(월) ~ 2026.06.04.(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견본주택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3:00, 은행장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시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을 통하여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발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4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청 도시재생과 6644호(26.04.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8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3층 12개동 총 1,250세대 중 일반분양 739세대 (조합 411세대 및 보류 12세대, 임대 88세대 제외)  
[특별공급 403세대(기관추천 73세대, 다자녀가구 73세대, 신혼부부 169세대, 노부모부양 22세대, 생애최초 6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163	01	059.8844A	59A	59.8844	26.0832	85.9676	38.9717	124.9393	32.9631	222	22	22	51	7	20	122	100	10
	02	059.8891B	59B	59.8891	26.1042	85.9933	38.9747	124.9680	32.9657	27	2	2	6	1	2	13	14	1
	03	072.7669A	72A	72.7669	24.1127	96.8796	47.3554	144.2350	40.0543	253	25	25	58	7	23	138	115	10
	04	072.4631B	72B	72.4631	23.8971	96.3602	47.1577	143.5179	39.8870	114	11	11	26	3	10	61	53	4
	05	084.6653A	84A	84.6653	30.0047	114.6700	55.0988	169.7688	46.6037	27	3	3	6	1	2	15	12	8
	06	084.6222B	84B	84.6222	29.9553	114.5775	55.0707	169.6482	46.5800	96	10	10	22	3	9	54	42	8
합 계										739	73	73	169	22	66	403	336	41



72A	101동 1,3호 104동 1,3호 108동 3,5호 109동 1,3호 112동 1,2호	1층	6	127,200,960	290,399,040	417,600,000	10,000,000	10,880,000	41,760,000	41,760,000	41,760,000	41,760,000	41,760,000	41,760,000	146,160,000	
		2층	10	129,850,980	296,449,020	426,300,000	10,000,000	11,315,000	42,630,000	42,630,000	42,630,000	42,630,000	42,630,000	42,630,000	42,630,000	149,205,000
		3-5층	30	131,160,760	299,439,240	430,600,000	10,000,000	11,53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150,710,000
		6-9층	40	131,830,880	300,969,120	432,800,000	10,000,000	11,64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151,480,000
		10-15층	59	132,501,000	302,499,000	435,000,000	10,000,000	11,75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52,250,000
		16-20층	48	133,140,660	303,959,340	437,100,000	10,000,000	11,855,000	43,710,000	43,710,000	43,710,000	43,710,000	43,710,000	43,710,000	43,710,000	152,985,000
		21층 이상	60	133,810,780	305,489,220	439,300,000	10,000,000	11,965,000	43,930,000	43,930,000	43,930,000	43,930,000	43,930,000	43,930,000	43,930,000	153,755,000
72B	101동 2호 104동 2호 108동 4호 109동 2호	1층	4	126,378,540	288,521,460	414,900,000	10,000,000	10,745,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41,490,000	145,215,000	
		2층	4	129,028,560	294,571,440	423,600,000	10,000,000	11,18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148,260,000	
		3-5층	12	130,338,340	297,561,660	427,900,000	10,000,000	11,395,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149,765,000	
		6-9층	16	130,978,000	299,022,000	430,000,000	10,000,000	11,5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50,500,000	
		10-15층	23	131,648,120	300,551,880	432,200,000	10,000,000	11,610,000	43,220,000	43,220,000	43,220,000	43,220,000	43,220,000	43,220,000	151,270,000	
		16-20층	20	132,318,240	302,081,760	434,400,000	10,000,000	11,72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152,040,000	
		21층 이상	35	132,957,900	303,542,100	436,500,000	10,000,000	11,825,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152,775,000	
84A	105동 1,4호 106동 1,4호 110동 1,4호 111동 1,4호	1층	4	158,270,160	361,329,840	519,600,000	10,000,000	15,98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181,860,000	
		2층	8	161,559,840	368,840,160	530,400,000	10,000,000	16,52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185,640,000	
		3-5층	14	163,204,680	372,595,320	535,800,000	10,000,000	16,79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187,530,000	
		21층 이상	1	166,524,820	380,175,180	546,700,000	10,000,000	17,335,000	54,670,000	54,670,000	54,670,000	54,670,000	54,670,000	54,670,000	191,345,000	
84B	105동 2,3호 106동 2,3호 110동 2,3호 111동 2,3호	1층	4	158,148,320	361,051,680	519,200,000	10,000,000	15,960,000	51,920,000	51,920,000	51,920,000	51,920,000	51,920,000	51,920,000	181,720,000	
		2층	8	161,438,000	368,562,000	530,000,000	10,000,000	16,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3-5층	24	163,082,840	372,317,160	535,400,000	10,000,000	16,77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187,390,000	
		6-9층	31	163,905,260	374,194,740	538,100,000	10,000,000	16,905,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188,335,000	
		10-15층	6	164,727,680	376,072,320	540,800,000	10,000,000	17,04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189,280,000	
		16-20층	1	165,550,100	377,949,900	543,500,000	10,000,000	17,175,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190,225,000	
		21층 이상	22	166,372,520	379,827,480	546,200,000	10,000,000	17,31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191,170,000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기타유상)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기타유상)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59A	59B	72A	72B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5	1	1	1	9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2	1	-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2	1	-	1	5	
	중소기업 근로자	10	1	8	3	1	3	26	
	장애인	창원시	5	1	4	2	1	3	16
		경상남도	2	-	2	1	-	1	6
		부산광역시	1	-	1	1	-	-	3
울산광역시		1	-	1	1	-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2	2	25	11	3	10	73	
신혼부부 특별공급		51	6	58	26	6	22	16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1	7	3	1	3	22	
생애최초 특별공급		20	2	23	10	2	9	66	
합 계		122	13	138	61	15	54	40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b>-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b></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창원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5-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 국가보훈부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경남도청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창원시청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5-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li>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li> <li>■ ②배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5</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5-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6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li>■ ①소득구분</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15%;">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30.(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5-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li>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li>■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li> <li>■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li> </ul>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해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5-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66세대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li> </ul>

<b>대상자</b>	<p>-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p>
------------	--

<b>당첨자 선정방법</b>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첨공급</td> <t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style="width: 7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style="width: 7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style="width: 7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b>비고</b>	<p>■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p> <p>■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입주자모집공고일</th> <th style="width: 33%;">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 <th style="width: 33%;">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6.04.30.(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 </tr> </tbody> </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30.(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30.(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창원시, 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창원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창원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ul> </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li> <li>■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35%;">가점제</th> <th style="width: 35%;">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body> </table> </li> </ul> <p>-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목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가점항목</th> <th style="width: 15%;">가점상한</th> <th style="width: 20%;">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20%;">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r> <tr> <td>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15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td> <td rowspan="3">35</td> <td>0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4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r> <tr> <td>1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5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6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li> <li>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li> </ol> </li> <li>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li> <li>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li> </ol>

	<p><b>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b></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인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b>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b></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b>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b></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 7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6.05.11.(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 앱</li> <li>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6.05.12.(화) 09:00~17:30		
	2순위	2026.05.13.(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3: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다자녀가구, 신혼부부,생애최초,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6.05.19.(화)</li> <li>• 확인방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6.06.01.(월) ~ 2026.06.04.(목), 4일간 (10:00~17:00)</li> <li>• 장소</li> <li>•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견본주택</li> <li>-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시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부적격자 등에 정당한 방법으로 공급 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선정의 상세일정은 정당계약 기간 이후에 홈페이지 및 SMS로 게시 할 예정입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b>공고단지 청약연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b>당첨자발표 서비스</b>	<b>청약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조회기간 : 2026.05.19.(화) ~ 2026.05.28.(목) /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b>문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일시 : 2026.05.1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팸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팸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부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05.23.(토) ~ 2026.05.27.(수),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견본주택</li> <li>-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li> </ul>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의 서류제출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자격검증,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등 본인/대리 발급이 구분되는 서류의 경우 본인 발급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점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점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점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점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게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점으로 인한 당점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점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당점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특별공급시 주택처분, 청약시 무주택구성원임을 서약하는 각종 서약 등)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전자·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 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세대원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본인과의 관계확인)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점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세대원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본인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본인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직인 날인본</li> </ul>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li> </ul>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증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li> <li>•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 발급내역 및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ul> </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시 인정 불가</li> <li>※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li> </ul>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li> <li>※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li> </ul>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비치</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li>•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li> <li>•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 가능해야 함)</li> <li>•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등)</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li> <li>•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인 경우 해당 자녀</li> <li>※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li> </ul>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li>※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 가능해야 함)</li> <li>•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li> </ul>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li> <li>[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일 현재, 직장+지역 포함하여 발급</li>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li> <li>※ 아래표-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소득증빙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li>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li> <li>※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li> </ul>
		○	자산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li>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li> <li>※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li> <li>• 견본주택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등)</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비속</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li> <li>•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li> <li>•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li> <li>• 입양인 경우 해당 자녀</li> <li>※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li> <li>•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li> </ul>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li>※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 가능해야 함)</li> <li>•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li> </ul>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일 현재, 직장+지역 포함하여 발급</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li> <li>※ 아래표-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li> <li>※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li> </ul>
		○	자산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li>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li> <li>※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li> </ul>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li> <li>※ 아래표-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li> </ul>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li> <li>※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1년 이상),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부 공개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존속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li> <li>※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li> </ul>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li> <li>•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li> </ul>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25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② 위촉증명서 및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미신고자)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상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 ③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소득금액증명원 ③ 전년도 재무재표	① 세무서, 등기소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직인 날인된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등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해당 직장 날인)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프리랜서 이고 소득이 지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건본주택에 비치) ② 전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행분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및납부내역증명서와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결정세액의 환급이나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③ 해당 직장 및 세무서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부동산 소유현황 ※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발급방법: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위택스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주택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위택스
		• 주택외의 집합건물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 발급방법 : 이택스(서울) 이용안내 > 조회, 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위택스(서울 외)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이택스, 위택스 ④ 위택스 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토지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개별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위택스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④ 위택스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본인	• 건보주택 비치(특별공급시 주택처분, 청약시 무주택구성원임을 서약하는 각종 서약 등)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 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외국인의 경우는 서명인증서로 대체 가능합니다.(서명인증서 제출시 서명 인증 공증 필수)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세대원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본인과의 관계확인)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세대원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본인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본인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직인 날인본	
해외근무자(단신부임)		○	해외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비자 발급내역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가점제 당첨자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존속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9 참고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b>검색대상</b>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b>주택의 범위</b>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b>주택처분 기준일</b>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b>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b>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b>조항</b>	<b>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b>	<b>주거전용면적</b>	<b>수도권</b>	<b>비수도권</b>
	<b>제53조 제9호가목</b>	<b>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b>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b>제53조 제9호나목</b>	<b>단독주택</b>	85㎡ 이하	5억원	3억원
		<b>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b>			
		<b>도시형 생활주택</b>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경우는 제외함</p>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의 전매제한은 없습니다.(전매 가능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기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통·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6.06.01.(월) ~ 2026.06.04.(목), 10:00 ~ 17:00 (4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건본주택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li> <li>※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홈페이지(<a href="http://www.메트로시티자산데시앙.com">http://www.메트로시티자산데시앙.com</a>)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li> </ul>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정당계약 이후)	

■ 계약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건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협	131-022-780856	자산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태영건설,주택도시보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기타유상)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상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자산개발정비사업조합]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 계약자 부담액 : 공급 계약 : 7만 5천원(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발코니 확장 계약 : 하단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참조 - 수입인지 구입처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아파트 공급대금,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기타유상)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일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필요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명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시공사)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시공사)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li> <li>•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li> <li>•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ul>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 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li> <li>•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li> <li>• 부적격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건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li> <li>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ul> </li> </o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li> <li>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특례제외)</li> </ol> </li> </ul>

	<p>2의2.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p> <p>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p> <p>4.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국민주택 또는 규제지역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p> <p>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부적격 당첨 제한 기간 중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p>
<p><b>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li> <li>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li> <li>※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될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이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사람은 무효 처리합니다.</li> <li>•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li> <li>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p><b>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li> <li>※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li> <li>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li> <li>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li> <li>•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li> </ul>
<p><b>기타 계약체결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 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 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li> </ul>
<p><b>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li> <li>•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li> <li>•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명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li> <li>•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li> </ul>

	<p>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li> </ul>
--	---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기타유상)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11

## 입주 관련 안내 및 기타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 입주예정일 : 2029년 01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반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자세한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 이용 시설물로 승인되었고, 아파트 시설물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실입주 후 사용 및 운영방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에서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대수

구분	주차대수	비고
법정대수	1,155대	아파트 1,138대, 근린생활시설 17대
설치대수	1,634대	아파트 1,615대, 근린생활시설 19대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차로의 유효높이 2.3m 이상(주차공간은 2.1m 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층별, 구간별 높이는 일부 상이할 수 있고, 분공사 시 레벨 변경 및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높이 일부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16년 1월 8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으로(창원시 고시 제 2016-10호) 일부 규정은 최초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	출입구-1 2.7m, 출입구-2 2.3m

- 본 사업은 2016년 1월 8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으로(창원시 고시 제 2016-10호) 일부 규정은 최초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12

## 추가선택품목

###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_유상)

#### ① 발코니 확장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59A	15,500,000	1,550,000	13,950,000	
59B	15,500,000	1,550,000	13,950,000	
72A	17,500,000	1,750,000	15,750,000	
72B	17,500,000	1,750,000	15,750,000	
84A	19,500,000	1,950,000	17,550,000	
84B	19,500,000	1,950,000	17,550,000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거실 창호는 시스템창호가 시공되며, 설계변경 필요할 경우 계약시 수분양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하며, 보증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소방검사 등의 준공검사를 득해야 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신협	131-022-939422	자산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태영건설,주택도시보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 품 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급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를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기타옵션\_유상)

- 추가선택품목의 선택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선택 및 계약일정 30일전에 대상자들에 한해 별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 품목(기타옵션)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기타옵션)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기타옵션)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 품목(기타옵션)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타 추가선택품목(기타옵션)에 대해서 계약자는 시공사에 민원 제기 및 하자보수 책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① 가전 기기

[단위 : 원, VAT 포함]

품 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제조사 및 모델명)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오브제 컬렉션 SET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친장)	전타입	5,500,000	550,000	4,950,000	[LG] 오브제 1도어 - 냉장고 : BC1L2AA / - 냉동고 : BC1F2AA - 김치냉장고 : BC1K3AA
인덕션	전타입	1,100,000	110,000	990,000	[LG] BEI3ASB4BI
식기세척기 (12인용)	전타입	1,260,000	126,000	1,134,000	[LG] DIE5PT
스마트오븐	전타입	450,000	45,000	405,000	[LG] MZ941CLCAT
복합 환풍기 (공용+부부 욕실, 2개소)	전타입	1,300,000	130,000	1,170,000	[힘펠] 휴젠트 루미

-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옵션 미선택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시 설치되며, 냉장고장 도어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의 LG오브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경우 지정된 단일 색상의 외부 패널이 들어가며, 외부 패널의 색상 추가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의 경우, 기존 주방 하부 수납장 공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이동 및 제품 색상 변경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식기세척기 설치에 따른 별도의 하부장 보강 및 정산 비용 없음)
- 복합환풍기는 기본 제품품목(기본 욕실 배기팬)의 가격을 제외 한 후 산정된 금액이며, 기본 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② 주방/드레스룸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 포함]

위치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제조사 및 모델명)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주방	[주방 패키지1] 엔지니어드 스톤 벽체+상판		59A	2,720,000	272,000	2,448,000	[KCC 글라스] 센스톤 퀴츠
			72A	3,050,000	305,000	2,745,000	
			84A, B	2,950,000	295,000	2,655,000	
	[주방 패키지2] 엔지니어드 스톤 벽체+상판+식탁일체형 아일랜드장		59B	4,630,000	463,000	4,167,000	
			72B	4,550,000	455,000	4,095,000	
	[주방 패키지3] 주방확장+엔지니어드 스톤 벽체+상판 +인덕션+팬트리		84A	7,800,000	780,000	7,020,000	
84B			8,770,000	877,000	7,893,000		
침실	팬트리 or 드레스룸 (선택가능)	침실3 분리형 : (선택1) : 팬트리 (선택2) : 드레스룸	59A	1,200,000	120,000	1,080,000	※ 해당 추가선택품목은 팬트리 or 드레스룸 선택이 가능합니다. (동시 시공 불가)
			59B	1,300,000	130,000	1,170,000	
			72A	1,200,000	120,000	1,080,000	
			72B	1,350,000	135,000	1,215,000	
	매립형 불박이장	침실2+침실3 매립형 불박이장	84A, B	1,700,000	170,000	1,530,000	폴딩도어 매립형 불박이장
			드레스룸	침실1 드레스룸	84A	1,600,000	160,000
	(선택1) 침실1 드레스룸+서재	84B		4,000,000	400,000	3,600,000	드레스룸 확장, 드레스룸 벽패널형 시스템가구 *중복선택 불가
	(선택2) 침실1 드레스룸+드레스룸	84B		6,400,000	640,000	5,760,000	
	(선택3) 침실1 드레스룸 확장	84B		6,500,000	650,000	5,850,000	

- 기본 타일 / 주방 MMA 상판+주방 벽체 타일 가격을 제외 한 후 산정된 금액이며, 기본 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 + 벽체의 스톤 재질은 원재료의 특성상 이음 부위 조인트 발생으로 마감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하자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기타옵션) 공급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기타옵션) 납부계좌	농협	301-0384-2532-01	(주)태영건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사업주체(조합) 추가선택품목(기타옵션)

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품 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 고 (제조사 및 모델명)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59A, 59B	선택1	거실+침실1(2대)	3,800,000	380,000	3,420,000	LG 전자
	선택2	거실+침실1+침실2(3대)	5,200,000	520,000	4,680,000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4대)	6,300,000	630,000	5,670,000	
72A, 72B	선택1	거실+침실1(2대)	4,000,000	400,000	3,60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3대)	5,400,000	540,000	4,860,000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4대)	7,100,000	710,000	6,390,000	
84A, 84B	선택1	거실+침실1(2대)	4,000,000	400,000	3,60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3대)	5,400,000	540,000	4,860,000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4대)	7,100,000	710,000	6,390,00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5대)	8,200,000	820,000	7,38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관련 배관 일체 포함, 중문(일체)은 사업주체(조합) 또는 사업주체(조합)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계약체결 및 시공 예정이며, 향후 하자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체(조합)에 있음을 고지해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관련 배관 일체 포함, 중문(일체)에 대한 계약일정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은 사업주체(조합)에서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세대는 에어컨 냉매 배관 설비시(냉매배관, 콘센트, 배수관) 거실 1개소, 안방 1개소 벽걸이형 형태로 설치됩니다.

② 현관 중문

[단위 : 원, VAT 포함]

품 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 고 (제조사 및 모델명)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중문	전타입	1,900,000	190,000	1,710,000	[KCC] 3도어 슬라이딩(수동)

- 현관중문은 사용승인전 프레임 및 레일 시공 후 보양을 하여, 이사완료 후 개별 방문 및 문짝 시공 예정입니다(파손예방 차원)

■ 사업주체(조합) 추가선택품목(기타옵션) 공급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기타옵션) 납부계좌	경남은행	207-0227-4886-09	자산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추가선택품목의 선택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선택 및 계약일정 30일전에 대상자들에 한해 별도 통보 할 예정입니다.

13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주변에는 전신주, 가로등, 지상기기(패드스위치, 변압기 등)가 존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는 7차 설계변경이 완료된 상태이나 일부 부대시설(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변경예정안(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등)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필요시별도 동의서 징구 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인근에 주택 및 기존 주거지 밀집해 있어 단지 내 일부 세대의 조망권 및 일조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 저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사업부지외부 추산근린공원 내에 산책길가에는 묘지가 존재합니다. 주변현황을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공통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주변 시설물 현황, 주동별 조망권, 주변 개발 및 공사 진행 여건, 유해시설, 묘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인근 주택 및 주거지와의 고저 차로 인해 단지 내부가 들여다보이거나 상호 간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사업지 외측의 기존 도로는 사업주체의 공사범위가 아니며,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병목 현상 발생시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함을 인지하여 청약 및 계약 바랍니다.</li> <li>• 세대창고는 10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각 동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105동은 지하 커뮤니티 시설로 인해 106동 지하2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창고의 설치위치 및 설치개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용처는 추후 사업주체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임대아파트가 함께 배치되어 있어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용공간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명칭은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펠넴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분양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 초등학교는 사업지 인근 무학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중학생은 제3학교군(마산중, 마산동중, 마산서중, 해운중, 마산여중, 마산의신여중, 합포여중, 마산제일여중, 성지여중)에 배치될 예정이나,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배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 시점의 정확한 배치 사항은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 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 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li> <li>•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 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공사 기간 중 법령의 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분양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키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허가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합니다.</li> <li>• 본 건축물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건축물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합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디자인],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의 정원,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7차) 도서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li> <li>•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li>• 본 건축물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 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입니다.</li> <li>•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li> <li>•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에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외에서 발생 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li> <li>•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 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하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및 단지 주변 현황(인접 아파트 단지, 인접 주택 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및 묘지, 단지 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도시 계획시설 포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 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변 여건상 당 사업지 내에 인접 건물용 전신주 및 맨홀 등이 경계부 측으로 일부 존치될 수 있으며, 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에 한해 해당 시설 관리자가 단지 내 출입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현재 단지 측면에 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로의 경계와 지적측량경계가 상이하여 경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부상 지적측량경계 면적으로 합니다.</li> <li>• 입주시 이사짐용 사다리차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및 조경, 마감, 유리난간 등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사하여야 합니다.</li> </ul>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사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자에게 별도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인허가 절차상 각종 심의(신고포함),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하지 않습니다.</li> <li>• 분양시 계획된 야간 경관조명 계획은 관련 인허가(심의포함)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홍보물은 분양 당시 최종 인허가(사업시행인가)도서 및 변경 예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분양이후 진행되는 인허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li> <li>•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발주처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li> </ul>
	도로 및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 인접 도로가 증설 신설될 예정이며, 향후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사업지 내 공공시설(도로)은 준공시 관할 관리청으로 기부채납 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지 인근 추산공원 산책로를 기존 배드민턴장 출입로와 연계하여 조성 추진할 계획이며,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시 변경 및 거부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지 인접 신설되는 중1-106호선대 1,4차로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노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웬스설치 및 구역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경계에는 현장여건 및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등은 변경 될수 있고,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 구간 및 소공원, 어린이공원 진입로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단지 경계에 설치되는 경계울타리(암반, 수목 등)는 인접건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본 사업지 경계 안쪽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토목,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li> </ul>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변경허가 포함)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마감자재는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li> <li>•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li> <li>•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li> <li>• 욕실 줄눈 색상은 시간 경과, 현장 여건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결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건축물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li> <li>•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창틀 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디자인],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데크 엘리베이터, 데크 계단 디자인, 상부 지붕 프레임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외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입니다.</li> <li>•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경관조명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등 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ul>

단지	단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대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의 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을 유의바랍니다.)</li> <li>•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함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 설치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외부 배경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 아파트 단지의 부지가 아니며, 지자체 심의 및 인허가 과정 중 도로 선형, 식재 계획,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모형, CG 등에 표현된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의 관련 민원을 당사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주변 도로와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비상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비상 차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 소음, 매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해 각종 환경권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치계획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 바랍니다.</li> <li>•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상부 혹은 부대복리시설 천정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 됩니다.</li> <li>• 저층부 입면 석재마감/석재뿔칠마감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외곽부위에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태양광발전설비, 위성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등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탈취기 및 급배기 환기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환기구, 제연설비 환기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본 공사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동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웅몰 또는 제연 웅몰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li> <li>•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 단지 내 비상 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등의 디자인 및 장식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외벽의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 등이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공용부 마감 기준은 시공사의 특화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조합)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세대 빛공해(눈부심) 등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101동, 105동, 107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업종이나 실외기로 인하여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101동 전면부 근린생활시설-1 주차장 인근에 단지 가스인입을 위한 가스정압실이 설치됩니다.</li> </ul>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조경수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한 조경 시설의 위치와 디자인은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li> </ul>

		<p>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 경계에 시공되는 수목 식재, 조명시설 등이 시공이 될 예정이며, 세부 디자인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ul>
	<p><b>동별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111동과 112동 사이에는 물탱크실, 펌프실, 발전기실, 전기실이 위치하며 인접 동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104동과 105동 사이에는 사우나 기계실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101동 지하2층 및 107동 지하2층에는 빗물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106동 옥상에는 소화수조 및 펌프실, 인명구조공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는 B.I. 및 단지명의 위치(설치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ul>
	<p><b>주차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입구와 인접한 저층부세대는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의 내부 도색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상부 시설이 단열이 필요한 부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 덕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2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하 전 층에서 전체 동 출입이 가능합니다.</li> <li>• 지하주차장 출입구-1 높이는 2.7m로 택배차 및 차고가 높은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며, 지하주차장 출입구-2 높이는 2.3m로 택배차 및 차고가 높은 차량의 진출입이 제한됩니다.</li> <li>• 지하1층 주차장의 통행로의 층고는 2.7m이며, 지하2층 주차장의 통행로의 층고는 2.3m로 지하2층으로 택배차 및 차고가 높은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li> <li>• 전기차 충전 시설은 화재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지하1층(101,103,104동 인근)에 집중되어 설치되며, 각 동에서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및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전용계단에 접한 선근에 인접하여 주차한 차량은 날씨에 따른 비, 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동출입구와 전기차 충전설비간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에 설치된 동 출입문 중 주출입문(방풍구조)에는 로비폰이 설치되며, 피난용으로 설치한 출입문(방화문)에는 로비폰이 미설치 되므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b>부대복리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형성 후 결정하여 운영합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환풍 D/A, 외부계단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크기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 세대에서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면, 입면, 단면, 마감재 및 집기, 창호 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 배수 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조경(식재, 포장 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 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입주정산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 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의 운영·보수·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창고는 계단실별 이용가능하도록 지하1층 각 엘리베이터홀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105동 입주자용 세대창고는 설계여건에 따라 106동 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세대창고 평면구성은 동선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 계획되어 있어 운영, 유지관리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창원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li> </ul>

단위세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타입의 경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 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별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조계획 및 공용부 창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모든 창호 및 그릴창, 유리, 난간, 손잡이, 제조사, 사양, 색상, 디자인, 재질, 열림방향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하부 턱 높이 및 좌우 설치 위치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는 기준층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며, 층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유상옵션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며, 제품의 단종 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커튼 박스 길이, 폭, 높이는 천장 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 및 보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커텐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옵션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 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li> <li>• PD, AD 등 샤프트 벽 내부 별도 마감(미장 포함) 없습니다.</li> <li>•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세탁물 건조기, 의류 보관함 등)이 설치공간의 폭, 높이, 길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사전에 확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li> <li>•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기본마감이 시공됩니다.</li> <li>•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마감자재의 경우 자재 입찰 결과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주방,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쪽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욕실 세면대 벽체에 급수급탕분배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li> <li>•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유상옵션)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비확장형 선택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별 현관은 출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 불박이 가구(유상옵션 포함), 신발장,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장 및 욕실 거울 후면에는 타일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조 포함)</li> <li>• 고정형 불박이 가구(유상옵션)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아트월, 현관 바닥, 욕실, 다용도실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타일 자재의 컬러나 문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에 시공되는 주방가구 상판 및 벽체의 스톤 재질은 원재료의 특성상 이음 부위의 마감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하자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됩니다.</li> <li>•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li>• 세대별 현관 주위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각 세대 현관 주위에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위세대 내 분전반 및 단자함은 노출된 벽체에 설치되며,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세대 내 통신세대 단자함, 전기세대 분전함,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화장실 세면대 벽체에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 후 주방가구, 일반 가구 규격 및 배치 불만, 전자제품 사용 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 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고, 내부 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 가전제품 등의 일반 소비자 가격 금액 판매가격은 공급 시점 및 유통과정의 특성에 따라 판매가격과 상이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li> <li>• 도배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처짐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배지의 특성상 화학적반응으로 인해 일부 이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li> <li>• 방수공사는 두께기준이 아닌 성능 기준으로 시공됩니다.</li> </ul>
------	------	--

	<b>제공품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별 기본 제공품목(일반가구,주방가구,마감자재,기기류)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 별로 상이하므로 분양 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 등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li> <li>• 각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 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모집공고 또는 분양계약서를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및 세대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 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b>가구공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주방 냉장고장의 경우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이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시 가구가 미적용 되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현관 신발장,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수량 및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후 이동 불가합니다.(아일랜드식탁 포함)</li> <li>• 가구의 힌지, 레일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시 동등 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 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수 있습니다. (가림판의 길이는 본 시공시 상이 할 수 있습니다.)</li> <li>• 배관 또는 후드가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결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 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목문, ABS 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li> <li>•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 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형별 팬트리의 유무, 크기 및 제공 형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li> <li>• 평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카달로그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59A타입 냉장고장 내경 치수 부족으로 일부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ul>
	<b>창호공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사 시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창호의 시공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열림 방향, 색상 제조사 등은 실시공시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내 문/창의 위치, 크기 및 형태, 제조사, 문열림 방향, 프레임, 손잡이, 힌지의 형태 등은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 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하부 턱 높이 및 좌우 설치 위치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는 기준층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며, 층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 및 전열교환기 배관 등의 이유로 크기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59B타입 부부욕실 도어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욕실 내부쪽이 아닌 방 내부쪽으로 열림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안방 분합창 손잡이는 주열림창호 안쪽에만 설치됩니다.</li> <li>•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기 연도 설치로 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 배관이 노출 설치되어 천장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 단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li> </ul>

	<p><b>전기·기계설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시공 시 욕실의 천정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배관은 기본타입(거실,안방)으로 설치되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세대는 천정 배관이 설치되므로, 기본타입(거실, 안방) 배관 설치가 제외됩니다.</li> <li>•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 난방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li> <li>• 욕실 바닥 난방코일은 세면기 앞, 양변기 앞에 시공되며, 해당구간 난방코일은 타 실의 순환배관으로 별도의 온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li> <li>• 세대 전열교환기는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는 당해 층 직배기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구조 및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질 있습니다.</li> <li>• 도시가스 배관은 안전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누출 시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li> <li>•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하부에서 주방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 배관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 분기하고 배관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도배 마감 후 안내스티커 부착 예정)</li> <li>• 각 층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 열선(카바형)이 설치됩니다.</li> <li>• 동별 외부로 가스배관 입상 시공시에는 3층까지 방범용 배관커버가 설치됩니다.</li> <li>•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 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li> <li>• 세대 내부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불가 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이 타입별 가스레인지 좌측 또는 우측 벽에 설치되어 가스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 설치 용이성을 위하여 주방 상판에 (기본MMA 상판, 유상 엔지니어드 스톤 동일함) 배관 구멍 타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어린이집,경비실)의 실외기 가동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욕조, 샤워, 세탁, 발코니), 욕실 악세사리 높이 및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수 있습니다.</li> <li>•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마루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세대 환기장치 가동시 운전 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 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수 있으며 입주자 임의로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합단자함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입주자 임의로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li> <li>• 욕실 천장 내부에 상부 세대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천장에는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되므로 유지관리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싱크대 하부장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주방 하부장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보일러 및 욕실 환기 팬의 위치 및 사양은 실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 갤러리(루바)창의 상부에 설비배관, 주름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실, 발전기실에 의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불편을 받을 수 있으며, 발전기실 DA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에 따라 옥외안테나의 설치는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위치 변경 될 수 있으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 및 전파, 빔공해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ul>
	<p><b>발코니 및 실외기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선택시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다용도실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 레벨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 구간의 바닥 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선홍통, 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있습니다.</li> <li>•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 배수 및 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 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 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될 수 있으며, 노출 시공 등에 대해 미관상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전열교환기, 환기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선택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배관 노출 등의 마감상태 변경이 있을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 타입 발코니에 대피공간이 설치됩니다.</li> <li>• 대피공간에는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적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 구간의 바닥 단차 형태, 적용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 될 수있습니다.</li> <li>• 발코니 모서리 및 1.5m 초과된 부분의 면적은 초과 발코니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의 사유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b>추가선택품목 (유상옵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선)을 포함하여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선)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의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선)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있습니다.</li> <li>• 각 세대 타입별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선)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모든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선)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li> <li>•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선)의 공사비는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li> <li>•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선)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불가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선)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추가선택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합니다.</li> <li>•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선)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제공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바랍니다.</li> </ul>
<p><b>홍보물 및 견본주택</b></p>	<p><b>기타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 및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본공사 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의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 주동 출입구,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부대복리시설 등은 본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형태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는 72A타입·72B타입·84B타입 유닛가 건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 분양홍보물 및 모형도 등을 통해 차이점을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으나,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 기준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li> <li>• 주동 옥탑층 및 측벽의 층수 표기 사항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공사 시 KS조도 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공사 시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li> <li>•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신고 및 승인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의 VR영상 등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등은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온도조절기, 스위치,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고, 추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없이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유니트 내에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냉방을 위한 설치품으로, 옵션 계약분은 추후 옵션계약 안내문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li> <li>•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본 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합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내용은 보도자료 기준이며, 인허가청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홍보물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 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일정 기간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및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 위치 등)은 건축허가 최종도서(설계 변경도서 포함)에 준합니다.</li> <li>• 견본주택 전시세대 천장에 일부 전시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조명 설치 제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li> <li>• 리플렛 및 카탈로그 등 분양 홍보용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품목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업지내 축적과 단지 주변 축적을 달리하여 표현하였으며, 일부 현황을 간략화 또는 축소하였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도로, 철도,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모형에 설치된 단지 내, 외부의 옹벽 및 시설물 등은 일부 도면과 현황 레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조정하여 제작하였으며, 본 공사시 실제 현황에 맞추어 실시설계 및 최종 시공될 예정입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등기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전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 제외됩니다.</li> <li>•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유상옵션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마감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14

기타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22026-101-0000600호	₩ 210,360,085,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확인_일체형스위치 적용됨)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인증대상(주택용)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시행 2016. 7. 27.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미산 지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신 청 자: 지산구역주택재개발 정비조합  
 3. 대 외 위 직: 경성남도 광원시 미산합동구 재산동7길 2-2  
 4. 신청 등급: 4

1. 구조 관련 등급		2.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내구성	★★★★	1. 단차 - 차 보행자 편의도 및 보행	★★★★
2. 기밀성	★★★★	2. 대공공차 근접성	★★
3. 내진성	★★★★	3. 시간가속도 및 시간가속도비 적용성	★★
4. 내충격성	★★★★	4. 방화내충격성 등급성	★★★★
5. 내충격성	★★★★	5. 단열성능차 근접성	★★
6. 내충격성	★★★★	6. 방화 - 방화용기 분사 및 매립성 채굴	★★★★
7. 내충격성	★★★★	7. 사용자 편의성 채굴	★★★★
8. 내충격성	★★★★	8. 화재안전성 관련 채굴성	★★★★
9. 내충격성	★★★★	9. 단열성능차 근접성	★★
10. 내충격성	★★★★	10. 방화내충격성 등급성	★★★★
11. 내충격성	★★★★	11. 화재내충격성 등급성	★★★★
12. 내충격성	★★★★	12. 화재내충격성 등급성	★★★★
13. 내충격성	★★★★	13. 화재내충격성 등급성	★★★★
14. 내충격성	★★★★	14. 화재내충격성 등급성	★★★★
15. 내충격성	★★★★	15. 화재내충격성 등급성	★★★★
16. 내충격성	★★★★	16. 화재내충격성 등급성	★★★★
17. 내충격성	★★★★	17. 화재내충격성 등급성	★★★★
18. 내충격성	★★★★	18. 화재내충격성 등급성	★★★★
19. 내충격성	★★★★	19. 화재내충격성 등급성	★★★★
20. 내충격성	★★★★	20. 화재내충격성 등급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사)한국그린빌딩협회의장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미산 지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인증번호	G-SEED-P-2023-0344-6
건축주명	지산구역주택재개발 정비조합	인증기준	(사)한국그린빌딩협회
준공일	2023년 01월 01일	유효기간	2023.03.30. ~ 사용승인(사용일시)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먼저 상한일
주 소	경성남도 광원시 미산합동구 재산동7길 2-2	인증등급	우수(그린2등급)
층 수	지하1층, 지상3층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연 면 적	180,804.7238㎡	비고	[별표1]신축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먼저 상한일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성 격 자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건축물(인증)이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설 계 자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건축물(인증)이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부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그린2등급) 건축물(인증)이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3년 03월 30일

(사)한국그린빌딩협회의장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시행 2017. 1. 20.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지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인증번호	19-주-에-1-1277
건축주명	지산구역주택재개발 정비조합	발급처	노경환
준공일	2023년 01월 01일	발급일자	2023.03.30
주 소	경성남도 광원시 미산합동구 재산동7길 2-2	발급기관	한국건축에너지기술원
층 수	지하1층 / 지상3층	발급일자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180,804.7238㎡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일시 종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발급일자	사용승인 또는 사용일시 종료일
설계자	(주)아우터리(사)한국에너지연구소	인증등급	1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WWh/㎡·년)	요구량	인증기준량 1차 에너지소비량(W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kg/㎡·년)	비율
479.6	125.7	141.0	1	32.0	

####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W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WWh/㎡·년)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년)
난방	9.0	9.9	9.0
냉방	35.3	67.7	53.1
급탕	30.7	35.5	26.4
조명	13.6	13.6	37.5
환기		8.9	24.6
합계	79.6	125.7	141.0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인증)이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건축에너지기술원장

### 친환경주택평가서

#### 친환경 주택 평가서

1. 일반사항

구분	구분명	구분내용	요구기준
건축주	성명(법인명)	지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090-221-8900
	사무소명	한국에너지기술원	02-338-8222
	사무소주소	경성남도 광원시 미산합동구 재산동7길 2-2	090-221-8900
건축사	성명	노경환	090-221-8900
	사무소명	한국에너지기술원	02-338-8222
	사무소주소	경성남도 광원시 미산합동구 재산동7길 2-2	090-221-8900
기 계	성명	노경환	090-221-8900
	사무소명	한국에너지기술원	02-338-8222
	사무소주소	경성남도 광원시 미산합동구 재산동7길 2-2	090-221-8900
진 기	성명	노경환	090-221-8900
	사무소명	한국에너지기술원	02-338-8222
	사무소주소	경성남도 광원시 미산합동구 재산동7길 2-2	090-221-8900

나. 건물정보

건축물소재지	경성남도 광원시 미산합동구 재산동7길 2-2
제1차에너지소비량	479.6 WWh/㎡·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32.0 kg/㎡·년

다.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사항, 양호, 양치유치, 불합격(불합격)
그리드 연계	적용	평가에 적용된 양호는 KS F2292에 의한 기준에 준하여 적용
대기환경개선기	적용	대기환경개선기(자동차 연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
대기환경개선기	적용	대기환경개선기(자동차 연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
대기환경개선기	적용	대기환경개선기(자동차 연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
대기환경개선기	적용	대기환경개선기(자동차 연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
대기환경개선기	적용	대기환경개선기(자동차 연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
대기환경개선기	적용	대기환경개선기(자동차 연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
대기환경개선기	적용	대기환경개선기(자동차 연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
대기환경개선기	적용	대기환경개선기(자동차 연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
대기환경개선기	적용	대기환경개선기(자동차 연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의 표기된 준공(예정)일 및 준공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유효수평지반가속도 (S)	내진능력(MMI 등급)
0.22g	VII-0.257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 ~VII)으로 표기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통신
상호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주)지화기술단	(주)신흥이엔지
금액	₩3,353,331,938	₩839,678,400	소방 ₩458,081,800 / 통신 ₩269,458,2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회사명	자산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태영건설	삼일산업 주식회사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78, 지하1층(자산동)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일직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 506, 18층 1801호 (역삼동, 역삼 아르누보씨티)
법인등록번호	191571-0005217	110111-0155451	134211-0014532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공식홈페이지 :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홈페이지(<http://www.메트로시티자산데시앙.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견본주택(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 | ☎055-223-1250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2026.04.30.(목)	
견본주택 오픈	2026.05.08.(금)	
특별공급 접수일	2026.05.11.(월)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2026.05.12.(화)
	2순위 접수일	2026.05.13.(수)
당첨자발표일	2026.05.19.(화)	
사전 서류접수	2026.05.23.(토) ~ 2026.05.27.(수)	
계약체결	2026.06.01.(월) ~ 2026.06.04.(목)	



**분양문의 055-223-1250**  
**견본주택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번지**  
**홈페이지 : <http://www.메트로시티자산데시앙.com>**